

## 감리지적 사례 FSS/1912-7 :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 쟁점분야 : 지분법 회계처리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2017.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분법투자 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설정한 펀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SPC를 통한 순차적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50%만 지분법손실로 처리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① 2016 회계연도에는 직접투자분에 대해 지분법손실을 전액 인식하였으나 간접투자분에 대해서는 50%만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 ② 2017 회계연도에는 간접투자분에 대해 추가 50%를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5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② 문단 36에 따르면 문단 36A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 ③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S사가 간접투자 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분법 투자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②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지분법투자손실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형식과 실질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투자든 간접투자든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피감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해 투자의 형식뿐만 아니라 투자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